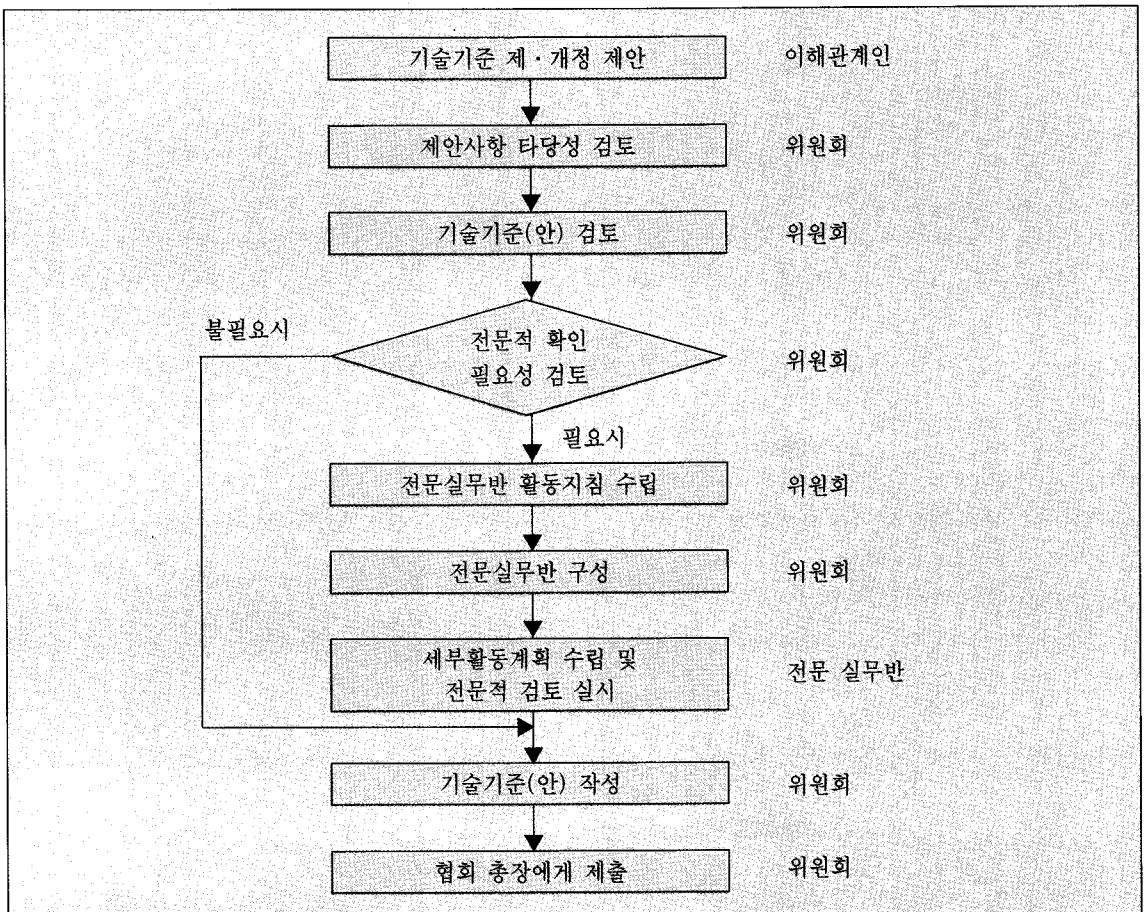


## 정보통신기술기준위원회 활동소식

협회는 96년 1월부터 민간차원의 정보통신기술기준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정부에 건의함으로써 정부의 기술기준정책을 지원하고 관련분야의 표준화활동 활성화를 도모하여 급변하는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정보통신기술기준위원회를 운영해오고 있다.

정보통신기술기준위원회는 통신사업자, 제조업체, 연구소, 정부기관의 기술기준관련 전문가가 주축이 되어 이해관계자가 제안한 기술기준 제·개정(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수정·보완과 기타 기술기준 관련제도 및 정책사항 검토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표 1〉 정보통신기술기준 제·개정(안) 작성 절차



현재 기술기준위원회는 유선, 전파통신, 방송, 전산망분야를 중심으로 활동중이며, 96년 상반기 위원회 산하에는 CATV전문실무반과 TV자막방송 전문실무반이 구성되어 기술기준(안)을 작성, 이를 지난 7월 정부에 건의하였다.

1. CATV관련 기술기준은 서비스도입 이전에 제정·고시되었던 기술기준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향후 디지털 신호전송 등의 서비스 발전에 따른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아래의 기술기준 및 관련 고시에 대한 개정(안)을 작성하였다.

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나.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다. 종합유선방송국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라. 구내통신설비 등의 설치방법(고시)

마. 종합유선방송용 주전송장치등의 기술적 조건(고시)

2. TV자막방송 기술기준은 정보통신부의 텔레비전 자막방송 서비스 도입예정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방송사, 가전 제조업체등이 회의를 통해 기술적 조건에 대한 기술기준(안)을 검토, 정부에 건의하였다.

향후 정보통신기술기준위원회에서는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전문실무반을 8월중에 구성하여 기 제안된 단말장치 및 사업자설비와 제안예정인 구내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안)의 전문적 검토와 확인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